##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대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50

발의연월일: 2024. 9. 12.

발 의 자:문대림・이병진・최민희

위성곤 • 이기헌 • 김한규

문정복 · 임호선 · 윤종군

임미애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·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하는 '관광기본권'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
이에 따라 장애인·고령자·임산부 등 관광약자와 경찰공무원·소 방공무원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관광 기회를 확대할 필요 가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위한 법적·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.

이에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와 신체적·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의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하도록 하여 신체적·경제적·사회적 이유 등으로 관광 활동 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관광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(안 제3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9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9. 저소득층,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 등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
- 10. 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, 교원 등 신체적·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의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광진흥계획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관광진흥계획의 수립) ①	제3조(관광진흥계획의 수립) ①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2		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	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9. 저소득층, 장애인, 고령자,		
	임산부 등 관광 활동에 어려		
	움이 있는 관광약자의 관광		
	활동 지원 및 관광접근성 제		
	고에 관한 사항		
<u> &lt;신 설&gt;</u>	10. 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, 교		
	원 등 신체적·정신적 피해가		
	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의		
	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접근		
	성 제고에 관한 사항		
<u>9.</u> (생 략)	<u>11.</u> (현행 제9호와 같음)	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		